



영국 노동연계복지 정책의 비판적 검토

이정희 (영국 워릭대학교 경영대 박사과정(노사관계 및 조직행동))

■ 머리말

최근 영국에서는 한 대학 졸업자와 HGV운전자 출신인 한 실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을 계기로 보수-자민당 연립정부 사회복지개혁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노동연계복지(workfare)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실업정책에서 '직업훈련'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복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대륙 유럽국가들과 달리 영국은 과도기적 '일자리 경험'에 방점을 찍고 의무적인 무급노동경험 참가를 전제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펴왔다. 2011년 6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 노동연계복지 프로그램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강제노동(forced labour)'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 및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물론 일부 기업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아왔는데, 이번 판결은 그간 반대여론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 조사 결과 이 프로그램이 실제 실업자들을 일자리로 돌아가게 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데다 정부를 대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급자들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도 확인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영국 항소법원 판결을 계기로 영국 정부의 노동연계복지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노동연계복지'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영국의 실업정책은 어떻게 설계돼 있는가, 실제 어떻게 운영돼 왔는가, 실업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돕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가 등이 주요 질문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 먼저 논란을 촉발한 소송사건과 영국 정부의 실업정책, 특히 무급노동체험 프로그램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그

효과, 이에 대한 각계의 평가 등을 차례로 검토해 본다.

■ 사건 개요, 그리고 판결

대학에서 지리학을 전공한 캐 라일리(24) 씨는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마침 지역의 박물관에서 자원봉사 일자리를 찾았다. 당분간 구직수당으로 살더라도 일자리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정부 일자리 프로그램(work programme)이 시행된 직후인 2011년 11월, 잡센터플러스(Jobcentre Plus, 고용센터)¹⁾ 상담원으로부터 구직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박물관 일을 그만두고 유통업체인 파운드랜드(Poundland)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듣게 되었다. 전공과는 관계 없는 물품 정리와 바닥 청소를 담당해야 했다. 물론 일한 시간만큼의 대가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구직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제이미슨 월슨(41) 씨는 5년째 실업 상태에 있다. 1994년부터 HGV 운전기사로 일을 했는데 2008년 해고되었다. 주당 60~67파운드(약 10만~11만 원)의 구직수당으로 겨우 생계를 연명해 왔다. 2011년 8월, 역시 고용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계속 수당이 지급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월슨 씨처럼 실업기간이 긴 사람들에게 일하는 습관을 기르게 할 목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버려진 가구를 모아서 고치기 뒤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일을 했다. 일주일에 30시간씩 무급으로 일을 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구직수당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다른 방법은 없었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한 이들은 함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실업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전공이나 기술과 관련 없는 곳에서 강제로 일을 하라고 요구한 것은 「강제노동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²⁾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

1) Jobcentre Plus는 일선에서 고용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구로, 우리나라 고용센터의 기능은 물론 주민센터(사회복지업무), 국민연금공단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 이해하면 된다.

2) BBC 인터넷판(2013. 2. 12), "Back-to-work scheme breached laws, says Court of Appeal". <http://www.bbc.co.uk/news/business-21426928>

난해 8월 고등법원(High Court)은 이들이 참가한 프로그램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률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기다리던 답을 얻었다. 항소법원(London's Court of Appeal)은 지난 2월, 일정 기간 이상의 실업자들에게 무급노동을 강제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업수당을 박탈하는 정부 정책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³⁾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 프로그램을 법률에 근거한 정부의 행정조치로 볼 수 있는지, 운영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보가 원고들에게 전달되었는지 등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강제받아서 안 된다"고 명시한 유럽 인권협약과 충돌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① 라일리 씨의 경우, 이 프로그램 참여가 그녀의 향후 진로를 발전시키려는 자발적인 노력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대안적인 진로를 위해 의미 있는 경험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② 강제 무급노동제도에 관한 더 근본적인 반대입장에 있었던 윌슨 씨의 경우 이 제도가 그의 필요에 전혀 충족되지 못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그의 계속되는 노력을 방해했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 일자리 프로그램(Work programme)⁴⁾

지난 201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일자리 프로그램(work programme)은 실업급여 등의 사회복지혜택 수급을 전제조건으로 실업자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장기실업자이거나 그럴 위기에 처한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복지에산지출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장기실업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는 보편적 급여(Universal

3) *Caitlin Reilly and Jamieson Wilson v. The Secretary of State for Work and Pensions*, [2013] EWCA Civ 66. <http://www.judiciary.gov.uk/Resources/JCO/Documents/Judgments/reilly-wilson-v-secretary-state.pdf>

4) DWP(2012), *The Work Programme*, London: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Credit benefit)⁵⁾ 개혁과 더불어 일자리 프로그램은 연립정부 복지개혁의 핵심(flagship)이다. 책정된 예산만도 2016년까지 5년 동안 30억~50억 파운드(약 5조~8조 3천억 원)에 이른다.

프로그램 구조는 조금 복잡한데, 먼저 어떤 사람들이 일자리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이는 수급자 분류와 연령, 실업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표 1 참조). 첫째, 실업자이거나 주당 16시간 이하를 일하면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구직수당 수급자)들은 연령에 따라 수당을 받은 지 9~12개월 후에 고용센터 상담원을 통해 이 프로그램 참여를 의뢰받게 된다. 노동시장에서 심각하게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무조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프로그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프로그램에서 탈락할 경우 일정 기간 구직수당을 박탈당하기도 한다. 둘째, 주로 건강상의 이유로 노동능력이 취약해진 실업자에 대한 지원제도인 고용 및 지원수당 수급자들은 이 수당을 신청한 뒤 받게 되는 노동능력평가(work capacity assessment)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여부가 결정된다. 노동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노동연계활동(work related activity) 그룹으로 분류돼 역시 고용센터 상담원 판단

〈표 1〉 일자리 프로그램 참가 대상

	수급자 분류	대상자	의뢰시점(이후)	참여여부
1	구직수당 (Jobseekers' allowance) 수급자	18~24세	수당 신청 후 9개월	의무
2		25세 이상	수당 신청 후 12개월	
3		노동능력상실급여(incapacity benefits) 수급자를 포함, 노동시장에서 심각하게 불리한 지위에 있는 경우	3개월	일부는 의무, 일부는 자발적
4	고용 및 지원수당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수급자	노동연계활동(work related activity) 그룹으로 분류된 경우	일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무
5		그 외 경우	제한 없음	자발적
6	소득보조 및 노동능력상실급여(Income support and incapacity benefits) 수급자	제한 없음 (단 2011~14년 잉글랜드 지역에만 적용)	제한 없음	자발적

자료: DWP(2012: 6).

5) Universal Credit은 실직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보조, 주거급여 등과 같은 실직 관련 지원과 노동연계 지원을 하나로 결합시킨 시스템을 말한다.

에 따라 프로그램을 의뢰받게 된다. 하지만 노동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조건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 참여여부는 본인 판단에 맡겨진다. 셋째는 소득보조 및 노동능력상실급여 수급자들의 경우인데, 이들은 대부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재심사 과정을 통해 고용 및 지원수당 수급자로 재분류될 예정이며 이때 노동연계활동 그룹으로 분류되면 역시 고용센터의 의뢰를 받아 일자리 프로그램에 배치될 수 있다.⁶⁾

■ 무급노동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이관된 대상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세부 프로그램은 연령과 실업기간, 노동능력 등에 따라 크게 5~6가지로 나뉜다.⁷⁾ 첫째, 일자리체험제도 (work experience scheme)이다. 실업기간이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있는 16~24세를 대상으로 노동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간은 2~8주이다. 이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현장체험을 하는 한편 정규직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참가기간은 4주 동안 연장될 수 있고, 이후 일정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수습(견습)생 신분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는 향후 그 기업에 고용될 가능성도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러한 일자리체험 기회가 10만 개가량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둘째, 2011년 8월에 도입된 부문기반체험제도(sector based work academy places)이다. 이는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자들이 직업훈련과 노동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애초 16~2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대에 개방돼 있다. 기간은 6주인데, 일자리에 배치되기 전 2주간 훈련과정을 거쳐 4주 동안 일자리 체험을 한다. 제공되는 일자리는 지역 내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지만 고용센터로부터 이 프로그램 참가를 요구받은 경우, 출석은 강제사항이 되고,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잃게 된다.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인 대졸자 라일리 씨의 케이스

6)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2012), 「영국, 보수-자민 연립정부 근로연계복지 개혁 및 관련 쟁점들」, 해외통신 025 참조.

7) 세부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은 주로 BBC(2012. 2. 29), “Government work schemes explained” 참조. <http://www.bbc.co.uk/newsbeat/17205904>

이다. 셋째는 의무현장실습(Mandatory work activity)이다. 모든 연령대에 적용되는데 13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된다. 역시 고용센터 상담원들의 판단에 따라 프로그램 공급자들에게 의뢰받을 수 있다. 일자리체험은 4주까지 진행될 수 있고, 참가자는 계속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합리적인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이후 13주 동안 수당을 박탈당할 수 있다. 넷째, 일자리 프로그램(work programme)이다. 정부 정책의 핵심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매년 50만 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질 운영은 정부로부터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회사와 자선기구 등에 의해 이뤄진다. 서비스 공급자들은 실업자들의 수요를 측정하고 수요자들을 평가한 뒤 훈련 또는 일자리 체험을 할 것을 권고한다. 물론 이 권고는 강제적인 것이다. 다섯째, 일자리 프로그램 이후(Post work programme)이다. 이는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가했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또한 지역사회 현장실습(Community Action Placement)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는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의무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당을 박탈당한다. 또 다른 소송 당사자인 윌슨 씨의 케이스이다.

이 프로그램 운영은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를 주창한 연립정부의 철학에 부합하듯 중앙정부나 정부의 하위부서가 아닌 민간, 공공, 자선기관 등의 조직들에 맡겨졌다. 프로그램 공급자들은 5년 동안 정부와 계약을 맺고 무급노동체험을 포함하여 실업자들을 일자리로 알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공급자들은 성과에 따라 정부로부터 비용을 받는다(payment for results). 비용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 ① 처음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의뢰되었을 때의 착수 비용(start fee), ② 이 대상자가 일자리를 얻어 3~6개월 동안 일을 했을 때 일자리 성과에 따른 비용(job outcome payment), ③ 그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경우 4주마다 일자리 유지 비용(sustainment payments)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되찾은 사람이 얼마나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 규모에도 차등을 뒀다. 프로그램 공급자가 청년 실업자를 노동시장에 복귀시킨 경우 1인당 최대 3,800파운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편, 실직 기간이 길고 기술이 부족하며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재취업시킬 경우 최대 13,700파운드까지 받을 수 있다.

■ 실효성 논란

하지만 수십억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한 정부의 일자리 프로그램의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하원 결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4개월 동안 노동연계복지(welfare to work) 프로그램 참가 대상자 가운데 안정적인 고용상태로 전환된 비율은 3.6%에 불과했다.⁸⁾ 이는 정부가 예상한 수치(11.9%)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물론 프로그램 공급자별로 실적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낮게는 2%에서 높게는 5% 수준으로 그 폭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프로그램을 평가하기엔 이른 시점이고, 결산위원회 조사 직후에도 20만 명이 넘는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야당인 노동당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worse than doing nothing)고까지 질타했다.

흥미로운 점은 프로그램 시행 전인 지난 2008년, 정부가 노동연계복지 프로그램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냈다는 점이다. 당시 고용연금부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3개국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⁹⁾에서 무급노동체험을 전제로 하는 노동연계복지제도가 고용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물론 노동당 정부 시절의 보고서이어서 현 연립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시 보고서는 ① 노동연계복지 제도가 복지혜택 의존자 수 감소(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없고, ② 이 제도가 구직 가능성을 높인다는 증거가 거의 없으며, ④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이 제도에 따른 효과를 받기 어렵다는 등의 점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노동연계복지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한 기존의 연구들¹⁰⁾과도 맥을 같이한다. 그럼에도 현행 노동연계복지 제도는 직업훈련이 아니라 실업자들의 고용경험 증대를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빠

8) BBC(2013. 2. 22), "Welfare to work scheme is failing". <http://www.bbc.co.uk/news/uk-politics-21532191>

9) Crisp, R. and D. Fletcher(2008), A Comparative Review of Workfare Programme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Research Report No.533, London: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10) Quaid, M.(2002), *Workfare: Why Good Social Policy Ideas Go Bad?* University of Toronto Press; Lodemel, I. and Trickey, H.(2000), *An Offer You Can't Refuse: Workfare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The policy Press.

른 진입(work-first approach)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복지혜택 수급권을 대상자들의 ‘권리’로 이해하기보다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조건부’ 복지혜택은 무급노동을 강제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급노동이 실업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소송을 제기한 라일리 씨는 “전공과도 무관한 무급노동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이 기간 동안 어떤 훈련도 제공받지 않았으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일자리로 복귀해야 하는 나에게는 완전 시간낭비였던 반면, 파운드랜드에만 도움을 주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윌슨 씨의 경험도 비슷했다. “이 프로그램은 내가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기존 정규직 일자리를 무급노동체험자들이 대체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뉴햄 카운슬의 한 노동자의 목격담이다.¹¹⁾ “그녀(무급노동체험자)는 서비스 제공업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을 맡았다. 원래 그 일자리의 초임은 연봉 17,000파운드(약 3,000만 원)이다. 여기에 유급휴가와 사용자의 연금기여분까지 보장받으며 노동자들이 일하던 자리에 노동연계복지(workfare)라는 이름으로 무급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 이 중 노동시장 창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도매마트인 북커스 홀세일(Bookers Wholesale)에서 일자리 프로그램에 따라 무급노동을 제공한 사람의 말이다. “그들(회사 매니저들이) 나를 냉장실로 데려갔는데 플리스 스웨터나 장갑 하나 주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다른 스태프들은 힘든 일을 하지 않고 나에게만 시킨다는 걸 알아챘다. 그들은 나만큼 힘든 일을, 오랜 시간 동안 하지도 않고서 임금을 받아가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은 실업자의 노동의욕 고취와 일자리 경험제공을 이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참가자들을 기존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는 인력풀로 활용하고 있고, 차별적 대우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노동력 착취’로 규정하는 노동 및 시민단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제도 폐지 혹은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기업들을 향해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한 실업자 인력 활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업

11) <http://www.boycottworkfare.org/wp-content/uploads/2012/02/Feb-2012-Leaflet.pdf>

들도 곤혹스러워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급여도 없이 장시간 일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실제 패스트푸드 체인인 버거킹은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중단하였고, 테스코는 정부 정책과 달리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했으며 패션 체인인 마탈란(Matalan)과 서점인 워터스톤(Waterstone) 및 전자제품 소매회사인 마플린(Maplin) 등은 이미 이 계획을 중단했다.¹²⁾

여기에 덧붙여 정부와 계약을 맺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급자들의 비리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프로그램으로의 알선에서부터 참가자가 향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한 경우까지 단계별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이 과정에 부정부패가 발생할 소지는 상존해 있고, 실제 한 업체는 내부 감독 시스템 소홀로 공급자 계약을 취소당하기도 했다.

■ 맺음말

이 글에서는 실업자들의 노동의욕을 고취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게 돕는다는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국 일자리 프로그램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폈다. 지난 2월 항소법원이 무급노동을 전제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현 정부의 정책은 법률 권한을 뛰어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을 계기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 원고측 변호를 담당한 테사 그레고리 변호사는 “정부는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 제도를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판결로 무급노동 불참을 이유로 수당을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자신들의 수당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는 한편 무급노동 제도를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 시범 운영 중이다. 고용연금부 대변인은 “법원은 실업자들이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돕는 정부의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인정했다”며 “때문에 이를 강제노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위법 시비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2) BBC(2012. 2. 25), “Burger King leaves work experience scheme for jobless.” <http://www.bbc.co.uk/news/uk-17163394>

이 제도 때문에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수당을 되돌려주는 대신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한 내용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약간 수정할 방침이다. 일을 하지 않고 복지혜택에만 의존하면 실업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강제노동 소지가 있는 현 제도 운영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은 물론 정규직 일자리 대체효과, 이중 노동 시장 창출 가능성 등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방식이 실업자들이 재취업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출발선에서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 (실업자들) 역시 하루 빨리 일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우리를 돕는 가장 좋은 방안은 (훈련기회 제공 등을 통한) ‘지원’이지 ‘처벌’(구직수당 박탈)이 아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라일리 씨의 말이다. **KLI**